

■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[별표 2]

수당 등의 지급 기준		
내역	금액(원)	기준
참석수당	200,000 / 300,000	- 회의, 현장조사 등 재난원인조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(1일 단위) - 2시간 미만(200,000원) / 2시간 이상(300,000원)
사전검토수당	150,000	- 활동 참석 외 자료수집·안전검토 등 별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 - 1회 당 지급
자문·원고료	30,000 / 35,000	- 자문이나 원고 작성 등을 통해 재난원인조사에 조력을 한 경우 - 한글원고 : A4용지 1매 기준 30,000원 - 외국어원고 : A4용지 1매 기준 35,000원 - A4용지 1매 기준 : 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, 또는 300단어 - 파워포인트 원고는 4개 슬라이드를 A4용지 1면으로 봄 - 원고지로 작성한 원고는 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1면으로 봄 - 재활용·재집필 원고 · 70% 초과 수정 시 : 전체 지급 · 30~70% 수정 시 : 해당 원고료의 50%만 지급 · 30% 미만 수정 시 :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- 목차, 표지, 간지, 참고문헌, 부록 등은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
여비	실비	- 재난원인조사 활동에 소요된 교통비·식비·숙박비 등의 경비 -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
연구비	실비	- 장비사용, 실험, 조사·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-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

※ 본 기준은 기획재정부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라 설정된 것이며,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.